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, 같은 란 라목(중전의 다목) 중 “않은”을 “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	법 제47조제1항제2호의2	100	200	300
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별표 2 제2호거목을 더목으로 하고, 같은 호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과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너.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7조제1항제7호의2	100	200	300
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2454